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유지 등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을 얻는 사람의 농업인 자격 배제 금지〉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2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계유지 등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을 얻는 사람의 농업인 자격 배제 금지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2. 제 출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없음.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농업소득 저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마을기업사무장, 학교급식종사자 등 여러 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

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위 고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농업인의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계유지 등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을 얻는 사람의 농업인 자격 배제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요건충족 확인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즉,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을 얻게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후단 신설></u>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이 경우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업</u>

현행	개정안
3. ~ 9. (생략)	<u>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u> 3. ~ 9.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령 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가입, 농지 취득 및 협동조합원 자격 인정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혜택이 있는바, 농업인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해당 개정 조항(법제3조제2호)은 일반적인 농업인 정의 규정에 해당하고 개정 내용은 농업인의 세부 기준에 대한 것인바 필요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인 정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며, 농가 내 가족종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소득 이하의 겸업 시 농업인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임호선의원안, 제2119830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3.04.11.)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라. 검토의견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을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에 따르면 ③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중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농업인의 기준 및 확인기준】

대 구 분		기 준 (시행령)	세 구 분 (고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제외요건
농업인	경영주	1천m ² 이상 농지 경영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		×
	경영주외 농업인	1년중 90일이상 농업종사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가족원외농업종사자	×
	영농조합 종사자	1년이상 고용		×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1년이상 고용		×

※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 관련규정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 2) (생략)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 현황을 보면, 전체 농업인 중 ① [경영주]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는 남성의 비율이 69.7%로 높은 반면 ② [경영주외농업인]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③ [공동경영주]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경영주의 배우자로 등록한 자)는 여성의 비율이 각각 83.5%와 86.8%로 현저히 높음.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수】

(단위 : 천명, %)

구분	농업인 (A+B+C)	경영주 (A)	경영주외 농업인(B)	공동경영주 (C)
계	2,555	1,822	498	235
남성	1,383	1,270	82	31
여성	1,172	552	416	204
남성비율	54.1	69.7	16.5	13.2
여성비율	45.9	30.3	83.5	86.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8.16.제출

* 출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x.arix.go.kr), 2024년 4월 기준

한편,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 저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농업 외 타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활동】

구 분		비 율
농업외 소득 활동 여부	하고 있다	32.1%
	하고 있지 않다	67.9%
농업외소득 활동 사유	추가소득 마련	38.5%
	생활비 부족	14.6%
	기타	7.9%
	소득활동 의향 없음	39.2%
농업외 활동 소득 금액	20만원 미만	8.6%
	20만원이상~70만원미만	48.5%
	70만원 이상	42.9%

*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외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외 소득활동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¹⁾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²⁾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1)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 가입대상. 다만, ①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②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등은 제외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가입대상. 다만, ①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농업인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농업인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법령이 아닌 고시에서 농업인의 지위 획득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법률 제3조제2호에서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만을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체계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령 상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익직불금,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취득 및 다양한 농업인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을 고려할 때, 농업인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주요 농업인 복지 및 세제 혜택

- 국민연금·건강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 관련 보조(직불제 포함)·융자사업 신청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부여
- ※ 다만, 사업별, 복지·세제별로 지원 대상자 상세 요건(농업경영체 등록 등) 상이하며,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수당 등이 있음

1. 주요 복지 혜택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촌 및 준농촌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차등지원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22% 별도경감(보건복지부)	국고 100%('04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 농업인	- 기존소득금액(103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정률지원) - 기존소득금액(103만원) 초과: 월 46,350원(정액지원)	국고 100%('95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인당 매학기 등록금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졸업 후 융자금 상환 *'18.1학기 이전 융자: 2년거치 상환, '18.2학기 이후 융자: 최대 10년 상환	'16년 부터 회수금 및 이월수입 등 활용(국고출연금 없음)('94 ~)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생	소득분위 구간(0~8구간)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50만원~전액)	국고 100%
영농도우미 지원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또는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일 영농도우미 인건비(84천원)의 70%인 58.8천원 국고 지원 (30% 자부담)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국고 70% 자부담 30%('06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대상 국고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0% 지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70% 지원	국고 50% 70%(영세농)

2. 주요 세제 혜택

구분	종류	주요 내용(해당법령)	비고 (감면시한)
국세	양도 소득세	▫ 8년 이상(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9)	계속 '23년*
	부가 가치세	▫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5,6)	'25년
		▫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5의2)	계속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9)	'25년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	'23년
	농특세	▫ 농업인의 농지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	계속
지방세	취득세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6①)	'23년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지특법 §6④)	'24년
	재산세	▫ 농지연금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지특법 §35의2)	'24년
	주민세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 (지특법 §10②)	'24년

*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적용 대상이 「농업식품기본법」 상의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지법」 상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한정